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6호

국제우편규정 제3조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인출권(SDR)과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환산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2년 6월 8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특별인출권(SDR) 환율

통화명	환율	화폐단위
SDR (Special Drawing Rights)	1,749	원 (Won)

부 칙

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0-3호(2000.11.23.)는 폐지한다.